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운영지침

[2019. 1. 1. 개정]

[2018. 6. 1. 개정]

[2018. 3. 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학부생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기 또는 방학 중 진행된 학부생의 연구수행 결과를 수업으로 간주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운영대학)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운영대학은 해당 학년도 단과대학 공통교육과정으로 연구학점 교과목을 편성하여야 하며, 학기 또는 방학 중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강자격) ①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는 제3조의 연구학점 교과목 수강으로 개시하며, 수강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나.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F포함)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강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재학 중 전공학점 6학점 미만 수강자

나. 직전학기 연구학점 과목 F 취득자

다. 졸업 마지막 학기인 학생이 해당 학기 계절수업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운영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지도교수는 참여 학생의 연구를 지도하여야 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의견을 일반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 학생 지도에 대하여 지도교수에게 별도의 책임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하 지도학생”)은 [별지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연구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① 교과목 수강신청은 제6조의 연구활동계획서를 토대로 교무처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며, 일반과목 수강학점은 해당 학기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으로 인정받을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으로 한다.

② 학칙에 정한 학기당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2학점(계절수업 별도), 재학 중 최대 10학점(학사과정 연구장학생제도 운영대학 소속 학생은 최대 14학점)을 학사과정 전공학점(전공일반)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속 단과대학 외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제8조(수업료 납부) ① 계절수업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절수업의 수업료 산정 기준을 따른다.

② 계절수업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참여 학생 중 자연계 특기자전형(과학인재전형 포함)으로 입학한 자는 수업료 납부를 면제한다.

제9조(연구활동 진행) ①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운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기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15주간

나. 계절수업: 1월 초 ~ 2월 초(동계), 7월 초 ~ 8월 초(하계) 각 6주간

② 지도학생은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운영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에 참여하여야 한다.

가. 학기 중: 총 90시간(15주간 주당 6시간) 이상

나. 계절수업: 총 90시간(6주간 주5일, 1일 3시간) 이상

제10조(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발표) 지도학생은 제9조 1항의 운영기간 종료 후 소속 대학 학장이 주관하는 공개발표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별지서식2]의 연구결과보고서 및 [별지서식3]의 연구결과공개발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결과 평가 및 성적부여) ① 지도교수는 제9조 1항의 운영기간 종료 후 연구결과 최종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학생에게 해당 학기 성적을 부여한다. 단,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A~F등급 또는 P/F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가 부득이하게 최종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학장이 위촉한 2인 이상의 평가교수에게 최종평가 및 성적 부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수강취소 및 수업료 반환) ① 학기 중 연구학점 교과목 수강철회는 학칙에 정한 수강철회 기준을 따른다.

② 계절수업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참여 학생이 수업 개시 전 연구학점 교과목 수강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③ 계절수업 개시 후 수강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학장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수강취소 및 수업료 반환을 허가한다. 단, 수업료 반환 시 수업운영규정에 정한 계절수업의 수업료 반환 기준을 따른다.

제13조(학업장려금 지급 및 제한) ① 우수학부생 연구학점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학업장려금(‘이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당해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학업장려금은 학사과정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수강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우수학부생 연구학점 교과목 수강을 취소하거나 철회한 자

나.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공개발표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다. 우수학부생 연구학점 교과목 성적이 F등급인 자

라. 계절수업 연구학점 교과목 수강자 중 직후 학기 휴학자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연구활동계획서(학생용)

소속 대학	소속 학과	성명	학번
연구제목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 서론/배경

-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분야
- 해결하고자 문제
- 연구과제 수행의 중요성

2. 연구목적

- 연구수행 목적
- 무엇을 어떠한 조건 하에 측정할 것인가? 또는 무엇을 계산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
- 가설 및 전제조건
- 연구결과물
-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3. 접근방법

- 연구목적 달성 방법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핵심프로세스
- 한계점 및 한계점 해결방안

4. 기대효과

5. 참고문헌 : 연구계획서 준비 과정에서 참조한 모든 논문 및 보고서 작성

※ 연구계획서는 1 ~ 2 Page 분량으로 작성하되, 상기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계획서 작성

년 월 일

신청자 : _____ (인)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연구결과보고서(학생용)

- 연구제목:
- 연구기간:
- 연구결과 요약

년 월 일

제출자 : _____(인)

일반대학원장 귀하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연구결과공개발표보고서

소속 대학	소속 학과	성명	학번

연구제목				
공개발표회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공개발표회 참여 증빙자료	<u>* 공개발표회 사진, 발표 PPT 자료 일부 등을 여기에 첨부</u> (뒷 페이지 활용 가능)			

년 월 일

일반대학원장 귀하